

DaelimPoly PP UH650P

호모폴리머



제품 설명

DaelimPoly PP UH650P는 Lyondellbasell사가 개발한 **SPHERIPOL** 공법으로 울산피피에서 생산한 호모 폴리프로필렌입니다. 이 제품은 CF, BCF (카페트), 자동차 내장재용 및 산업용 단섬유로써 적합한 제품입니다. 그리고 **DaelimPoly PP UH650P**는 또한 우수한 색상발현성, softness 및 interlacing 성을 가지고 있어, CF용으로서 특히 우수한 물성을 나타냅니다. **DaelimPoly PP UH650P**는 미국 식품의약품국(FDA)의 식품포장 규격인 **21 CFR 177.1520** 규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.

특성 우수한 방사성/ 우수한 연신성/ 우수한 섬유 유연성 & 가공성
시장 Textile
주요용도 MF/ CF/ BCF/ 자동차 내장재용/ 산업용 단섬유/ 카페트

| ASTM Data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물성 | 측정치 | 단위 | 측정방법 |
| 용융지수 (230°C, 2.16kg) | 15 | g/10 min | ASTM D1238L |
| 밀도 | 0.9 | g/cm ³ | ASTM D1505 |
| 굴곡탄성률 | 16000 | kg/cm ² | ASTM D790 |
| 인장강도(항복점) | 350 | kg/cm ² | ASTM D638 |
| 신율(항복점) | 12 | % | ASTM D638 |
| 아이조드 충격강도 (23°C) | 3 | kgfcm/cm | ASTM D256 |
| 록크웰경도 (R-Scale) | 104 | R-Scale | ASTM D785 |
| 연화점 | 152 | °C | ASTM D1525 |
| 열변형온도 (0.46 N/mm ²) | 107 | °C | ASTM D648 |

- 위의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, 제품 사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.
- 울산피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사용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 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사용자가 동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제한 사항 및 사용 설명을 준수하지 않거나, 해당 제품을 특정 범주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각각의 특정 용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시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상해 또는 손해는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며,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.
-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울산피피는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(판매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일체의 보증 포함)도 하지 않습니다.
- 본 제품(들)의 사용은 아래의 경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.
 -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3,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4 및/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3 의료 기기;
 - 영구적 체내 이식을 수반하는 용도;
 -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용도; 또는
 - 납, 석면 또는 메틸삼차부틸에테르 (MTBE) 관련 적용

사용자는 본 제품을 위 범주에 사용함에 따른 일체의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,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.

-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각각의 구체적 사용 방식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 범주에서 본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. 단,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동 제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 -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1,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1 및/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1 의료 기기;
 -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2,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2 혹은 클래스 3 및/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2 의료 기기;
 - 전술한 의료 기기 중 하나의 일부 또는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필름, 걸포장 및/또는 제품 포장재;
 - 활성 제약성분에 직접 닿는 포장재 및/또는 흡입, 주사, 정맥·코·안과적(눈)·소화기 혹은 국소(피부) 투여를 위한 조제 형태;
 - 담배 관련 제품 및 사용;
 - 전자 담배 및 유사 기기; 또는
 - 원자로의 일부 또는 부품으로 간주되는 압력 파이프 또는 설비

*미국 식품의약품국,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유럽연합 규정에 대해 언급된 모든 내용은 그에 준하는 다른 나라의 규제 분류를 포함합니다.

- 본건 책임부인고지문의 목적상 "판매자"는 울산피피 및 울산피피가 본 고지문이 적용되는 제품 판매를 위해 선임한 자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

Trademarks

제품명에 언급된 상표는 DL케미칼이 소유하고 사용하며, 울산피피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입니다.